

1. 개정이유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주요공정 시공감리 대상 기준 등을 명확화하고, LNG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제도 내실화 및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 예외기준 마련 등 도시가스 안전관리를 합리화하는 한편, 정압(밸브) 기지 내 임시공급시설 활용 체계 마련 및 도시가스사용시설 배관 안전기준 마련 등 도시가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공정 시공감리 대상 기준 명확화 (안 제23조제4항제1호)

주요공정 시공감리 대상인 배관을 본관 및 공급관으로 명확히 규정
나. 정기검사 증명서 발급대상의 용어 명확화 (안 제25조제6항 및 제7항)
“최초 정기검사”의 표현은 최초 1회만 증명서가 발급된다는 오해를
줄 수 있어 이를 “정기검사”로 명확히 규정

다. LNG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제도 내실화 (안 제27조의3제1항제3호
및 별표5 제1호라목1)가) 및 제1호마목)

LNG 저장탱크의 구조물 진단 등급 및 안전성평가 등급을 반영하여
산정한 종합안전등급에 따라 진단주기 차등화(4~6년)하고, 내진성능
평가 도입

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적용 범위 확대 (안 제64조제2항)

가스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

도록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대상에 가스온수기를 추가

마. 인용 법률 제명 등 정비 (안 별표1제1호다목)

기존 법률 변경에 따라 현행법에 맞도록 인용 법률 제명을 정비

바. 정압(밸브)기지 내 임시공급시설 활용 체계 마련 (안 별표2제3호나목4)·다목4) 및 별표5제2호가목6))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 내에 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사 계획의 승인 대상에 추가하고, 세부시설 기준 등을 마련

사. 정압(밸브)기지 내 고압배관 안전성평가 대상 제외 (안 별표5제2호가목2))

정압(밸브)기지 내 고압배관 신규 설치시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나, 수평거리·벤트스택·경계책 등 안전거리 및 다중안전장치를 이미 적용받고 있어 안전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

아. 가스계량기 높이 규정 합리화 (안 별표7제1호가목1)나))

가스계량기를 격납상자 등에 설치하더라도 검침 및 점검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바닥으로부터 2.0m 이내 설치하도록 규정

자. 가스사용시설 배관 안전기준 마련 (안 별표7제1호가목3) 및 4)다))

가스사용시설도 가스공급시설의 노출배관에 대한 신축흡수조치, 매설배관의 보호판 및 라인마크 설치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

차.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 제외기준 합리화 (안 별표7제1호가목4)가)①)

월 사용예정량에 관계없이 연소기가 연결된 각 배관에 안전장치를

갓출 경우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의 설치를 제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배관”을 각각 “본관 및 공급관”으로 한다.

제25조제6항 중 “최초 정기검사”를 “정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최초정기검사”를 “정기검사”로 한다.

제27조의3제1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나목의 해 이후는 별표5 제1호마목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종합안전등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해

제64조제2항 중 “제외한다)와”를 “제외한다)나 가스온수기 및”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압기지 내 임시공급시설(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용기를 사용하여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이동이 가능하도

록 제작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공사

4) 임시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별표 5 제1호라목1)가)(2) (가)의 진단 항목란 중 “사항”을 “사항, 내진성능평가(지진으로부터 가스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이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인지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보고서”로 하고, 같은 (2) (나)의 진단 항목란 중 “있다)”를 “있다), 구조물 안전성 평가등급(구조물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등급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산정, 구조물 진단 등급(부재별 상태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재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의 외관 상태를 하나의 등급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산정, 내진성능평가 적정성 확인”으로 하며, 같은 (2) (다)의 진단 항목란 중 “저장탱크 종합 평가(자료 및 현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평가한 것을 말한다)”를 “종합안전등급(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산정한 등급을 말한다) 산정”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종합안전등급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의 정밀안전진단 주기

종합안전등급	진단주기
A등급	6년
B ~ C등급	5년
D ~ E등급	4년

비고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는 마지막 진단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별표 5 제2호가목2) 중 “제3호”를 “제3호[가목1)사)⑥ 및 ⑦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목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부대설비기준

가)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는 비상전력·조명설비·전기설비
·통신설비 또는 압력기록장치 등 그 정압기와 밸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나) 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 ① 임시공급시설의 주위는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성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가 아닐 것
- ② 임시공급시설에는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계표지를 할 것
- ③ 임시공급시설 중 중압 이상의 도시가스가 통하는 부분은 내압성능을 가지도록 할 것
- ④ 임시공급시설 중 가스가 통하는 부분은 기밀성능을 가지도록 할 것
- ⑤ 임시공급시설은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별표 6의2 제1호가목1)나)의 표에 따른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 ⑥ 임시공급시설의 원동기에는 불씨가 방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 ⑦ 임시공급시설에는 그 설비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것
- ⑧ 임시공급시설에는 소화설비와 재해발생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에 필

요한 자재 및 용구 등을 비치할 것

⑨ 임시공급시설이 가동 중일 때에는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엔진을 정지시킨 후 주차제동장치를 걸어 놓고, 자동차 바퀴를 고정목 등으로 고정시킬 것

⑩ 임시공급시설은 도시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가스공급시설의 운전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 작동될 것

⑪ 임시공급시설이 가동 중일 때에는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가동상태를 감시할 것

⑫ 임시공급시설은 외부충격으로부터 보호될 것

⑬ 임시공급시설의 가동기간은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일 것

별표 7 제1호가목1)나) 단서 중 “설치 높이의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를 “바닥으로부터 2m 이내에 설치한다”로 하고, 같은 목 3)다)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3) 라)를 삭제하고, 같은 3) 마)부터 타)까지를 각각 라)부터 카)까지로 하며, 같은 3) 아)(종전의 자))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4)가)제1항 중 “월 사용 예정량 2000m³ 미만으로서 연소기”를 “연소기”로 하며, 같은 4)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하천부지에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별표 6 제3

호가목2)아)①㉠를 준용할 것

② 매설되어 있는 배관 외의 배관(옥외공동구에 설치된 것과 굴착으로 주위가 노출된 것은 제외한다)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흡수하는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배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설된 배관의 주위에는 그 배관이 매설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할 것

다) 중압 이상의 배관에는 굴착공사로 인한 배관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3제1항제3호, 제64조제2항, 별표2 제3호나목4)·다목4) 및 별표5 제1호라목1)가)(2)·마목·같은 별표 제2호가목6), 별표7 제1호가목3)·4)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5 제1호 라목1)가)(2)의 개정규정 중 내진성능 평가 보고서 제출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7 제1호가목3)·4)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가스설비 공사를 착공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시설은 제23조제4항제1호, 별표 7 제1

호가목1)나), 같은 별표 제1호가목3)·4)다) 및 같은 별표 제1호가목4)가)①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시공감리·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등의 기준 등) ① ~ ③ (생략)	제23조(시공감리·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등의 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주요공정 시공감리와 일부공정 시공감리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④ ----- ----- -----.
1. 주요공정 시공감리 대상	1. -----
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u>배관</u> (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가. ----- ----- ----- <u>본관</u> 및 <u>공급관</u> -----
나.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u>배관</u> (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나. ----- ----- ----- <u>본관</u> 및 <u>공급관</u>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25조(정기검사) ① ~ ⑤ (생략)	제25조(정기검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u>최초 정기검사</u> 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 ----- <u>정기검사</u> ----- ----- -----.
⑦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영	⑦ -----

<p>가.·나. (생 략)</p> <p><u>다. 나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u></p> <p>② ~ ⑧ (생 략)</p> <p>제64조(도시가스사고로 인한 손해 보상보험) ① (생 략)</p> <p>②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공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말하며,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온수보일러는 <u>제외한다</u>)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로 한다.</p> <p>③ (생 략)</p>	<p>가.·나. (현행과 같음)</p> <p><u>다. 나목의 해 이후는 별표5 제1호마목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종합안전등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해</u></p> <p>② ~ ⑧ (현행과 같음)</p> <p>제64조(도시가스사고로 인한 손해 보상보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u>제외</u> <u>한다</u>)나 가스온수기 및 ----- ----- ----.</p> <p>③ (현행과 같음)</p>
---	--